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

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(1일당)

분류	코드	금액
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6시간 미만	ac731	13,320
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6시간 이상	ac732	19,980

급여기준

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산정대상

- 1)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는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임산부로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인정함.
 - 다음-
 - 가. 자궁 수축 검사상 20분동안 4회 이상 또는 1시간 동안 8회 이상의 자궁수축이 관찰된 임신 34주 이내의 조기진통
 - 나. 임신 34주 이내의 조기 양막파열
 - 다.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응급수술 전 · 후 경과관찰을 요하는 경우
 - 라.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
 - 마. 양수과소증 또는 양수과다증
 - 바. 자궁내 발육지연 사. 쌍태간 수혈증후군
 - 아. 산과적 출혈
 - 자.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는 임산부
 - * 상기 적응증에 해당함에도 집중치료가 아닌 단순 분만을 위해 대기 또는 검진만을 위해 내원한 경우에는 산정할수 없음
- 2)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는 '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집중관리료 산정대상'에 해당하나 '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급여기준'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고위험임산부를 집중치료한 경우에 인정함.
 - 가. 산정기관 : 분만실을 신고 \cdot 운영하며, 산부인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의료기관
 - 나. 장비
 - 의료가스시설
 - 태아감시장치, 심전도모니터, 맥박산소계측기
 - 심전도기록기, 도플러, 초음파기기
 - 지속적 수액 주입기
 - 1. 단,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나 불가피하게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(unit) 외에서 고위험임산부를 집중치료한 경우에도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를 인정함.
 - 2. 산정횟수: 고위혐임산부 집중관리료는 1일 1회 산정하며,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7회 이내로 산정함. 단, 동일날 고위혐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와 동시에 산정 할 수 없음.